|  |  |  |
| --- | --- | --- |
| **환경보호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23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환경보호청(국):<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 환경보호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오염물 배출량에 관한 모니터링 및 계산 문제납세자가 모니터링기구에 위탁하여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그 당월 동일한 배출구로 배출한 동일한 오염물이 여러 모니터링 데이터에 있을 경우, 과세 대기오염물은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균값에 따라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과세 수오염물은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유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값으로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기간 내 당월 모니터링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을 넘겨 최근 1회차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여 과세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오염물배출 허가관련업종에 속하는 납세자는 그 과세 오염물 배출량의 모니터링 계산 방법을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배출 오염물 종류가 많은 등의 원인으로 모니터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량의 오염물 배출 계수와 물질 균형방법 계산 발표에 관한 공고>(원 환경보호부공고 2017년 제8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 중, 관련 업종에 적용하는 오염물 배출 계수 방법 중 오염물 배출 계수가 구간값일 경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오염물 배출 계수 값을 확정한다.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업종에 속하는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생태환경부에서 아직 적용 오염물 배출 계수, 물질 균형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임시로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시, 의거한 오염물 배출 계수, 물질 균형 방법 및 표본 추출 추산방법을 참조하여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2. 과세 수오염물 오염당량 수에 관한 계산 문제과세 수오염물의 오염당량 수는 해당 오염물의 배출량에서 해당 오염물의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그 중, 색도인 오염당량 수는 수오염물 배출량에서 색도 기준 초과 배수를 곱하고 다시 적용한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가축사육업 수오염물의 오염당량 수는 해당 가축사육장의 월평균 사육 두수에서 적용한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가축사육장의 월평균 사육 두수는 월초 사육 두수와 월말 사육 두수의 평균 수량으로 계산한다. 3. 과세 고체폐기물 배출량 계산과 납세신고에 관한 문제 과세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은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서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 저장량, 처리량 및 종합 이용량을 제한 잔액이다. 납세자는 과세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과 종합 이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여야 하고 정확히 계량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 과세 고체폐기물을 기타 단위와 개인에서 넘겨 저장 및 처리 또는 종합 이용을 진행할 경우, 고체폐기물의 이전량에 상응하는 그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 또는 종합 이용량을 계상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받은 과세 고체폐기물 이전량은 그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과세 고체 폐기물에 대한 종합 이용을 진행할 경우, 공업정보화부가 제정한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평가관리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신고 시, 세무기관에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 저장량, 처리량과 종합 이용량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고체폐기물 흐름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자료 즉, 고체폐기물 처리 이용 위탁계약서, 수탁자의 자격 증명, 고체폐기물 이전 영수증, 위험 폐기물 관리대장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료와 관련되고 이미 환경보호세 기초 정보수집표에서 수집하였으나 아직 변동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위험폐기물 대장관리요구를 참조하여 기타 과세 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대로 생산된 고체폐기물의 종류, 수량, 행방 및 저장, 처리, 종합 이용, 전입접수 등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과세 고체폐기물 관리대장과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과세소음 납부세액에 관한 계산 문제과세소음의 납부세액은 국가규정기준 데시벨을 초과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적용세액이다. 소음 기준 초과 데시벨이 정수 값이 아닐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 값으로 한다. 1개 단위의 동일 모니터링 지점에 당월 여러 모니터링 데이터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고 1회 기준 초과 소음 레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소음원은 1개월 내 누적 주간 기준 초과가 15일 주간을 넘지 않고 또는 누적 야간 기준 초과가 15일 야간을 넘지 않을 경우, 각각 반으로 줄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재정부세무총국생태환경부2018년 3월 30일 |  | **关于环境保护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8〕23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环境保护厅（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现就环境保护税征收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排放量的监测计算问题　　纳税人委托监测机构对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排放量进行监测时，其当月同一个排放口排放的同一种污染物有多个监测数据的，应税大气污染物按照监测数据的平均值计算应税污染物的排放量；应税水污染物按照监测数据以流量为权的加权平均值计算应税污染物的排放量。在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的监测时限内当月无监测数据的，可以跨月沿用最近一次的监测数据计算应税污染物排放量。纳入排污许可管理行业的纳税人，其应税污染物排放量的监测计算方法按照排污许可管理要求执行。　　因排放污染物种类多等原因不具备监测条件的，纳税人应当按照《关于发布计算污染物排放量的排污系数和物料衡算方法的公告》（原环境保护部公告2017年第81号）的规定计算应税污染物排放量。其中，相关行业适用的排污系数方法中产排污系数为区间值的，纳税人结合实际情况确定具体适用的产排污系数值；纳入排污许可管理行业的纳税人按照排污许可证的规定确定。生态环境部尚未规定适用排污系数、物料衡算方法的，暂由纳税人参照缴纳排污费时依据的排污系数、物料衡算方法及抽样测算方法计算应税污染物的排放量。　　二、关于应税水污染物污染当量数的计算问题　　应税水污染物的污染当量数，以该污染物的排放量除以该污染物的污染当量值计算。其中，色度的污染当量数，以污水排放量乘以色度超标倍数再除以适用的污染当量值计算。畜禽养殖业水污染物的污染当量数，以该畜禽养殖场的月均存栏量除以适用的污染当量值计算。畜禽养殖场的月均存栏量按照月初存栏量和月末存栏量的平均数计算。　　三、关于应税固体废物排放量计算和纳税申报问题　　应税固体废物的排放量为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减去当期应税固体废物贮存量、处置量、综合利用量的余额。纳税人应当准确计量应税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和综合利用量，未准确计量的，不得从其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中减去。纳税人依法将应税固体废物转移至其他单位和个人进行贮存、处置或者综合利用的，固体废物的转移量相应计入其当期应税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或者综合利用量；纳税人接收的应税固体废物转移量，不计入其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纳税人对应税固体废物进行综合利用的，应当符合工业和信息化部制定的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评价管理规范。　　纳税人申报纳税时，应当向税务机关报送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贮存量、处置量和综合利用量，同时报送能够证明固体废物流向和数量的纳税资料，包括固体废物处置利用委托合同、受委托方资质证明、固体废物转移联单、危险废物管理台账复印件等。有关纳税资料已在环境保护税基础信息采集表中采集且未发生变化的，纳税人不再报送。纳税人应当参照危险废物台账管理要求，建立其他应税固体废物管理台账，如实记录产生固体废物的种类、数量、流向以及贮存、处置、综合利用、接收转入等信息，并将应税固体废物管理台账和相关资料留存备查。　　四、关于应税噪声应纳税额的计算问题　　应税噪声的应纳税额为超过国家规定标准分贝数对应的具体适用税额。噪声超标分贝数不是整数值的，按四舍五入取整。一个单位的同一监测点当月有多个监测数据超标的，以最高一次超标声级计算应纳税额。声源一个月内累计昼间超标不足15昼或者累计夜间超标不足15夜的，分别减半计算应纳税额。财政部 税务总局 生态环境部　　2018年3月30日　　　 　　 |